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12월 21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행정적 검토 】

- 조례안 제9조는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에 포상을 함으로서 리통반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3조는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만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해 민간위탁교육, 체육대회 및 국내외연수, 표창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민행정의 중간적자인 역할을 수행하는 리통반의 대표로서 이통반장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다만 위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는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을 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행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열람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 열람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통반장의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6조제2항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통반장이 지득한 비밀의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상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제천시 하소동 『하소힐스테이트 APT』 신축에 따른 통반신설은 통은 38통에서 40개통으로, 반은 207반에서 218반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이·통·반장 연합회가 임의단체인지?, 법적인 단체인지?
(박성하 의원)
- 조례제13조에 단체보험만 가입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제13조에 2호,3호,4호,5호가 삽입되는 것인지?(권건중 의원)
- 조례안제13조3호 국외연수자 선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는지?
타단체와의 형평성은 맞는 것인지?(양순경 의원)

나. 답변요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임의단체임.
- 조례중 운영평가를 보면 이·통·반을 선정 보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통·반장 사기양양 시책들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 사기양양시책을 정확하게 한 것임

- 리통반의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우수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려고 함. 해외연수는 농업인관계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제15조 편의제공 및 사기양양 내용중에 3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2항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및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 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하고, 제13조 3항을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삭제함.(박성하 의원)

7. 심 사 내 용

- 박성하의원의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2.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2.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한다.

안 제13조 “3.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연수”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양양)</p> <p>2. <u>직무교육</u>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p> <p>3. <u>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u> 및 <u>국·내외연수</u></p>	<p>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양양)</p> <p>2. <u>직무교육, 연수</u>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p> <p>3. (삭제)</p>